

의안번호	201
발의일자	2023. 2. 24.
회부일자	2023. 2. 28.

제338회 도의회 임시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3. 3. 10. (금)

『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 진 영

『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서석영 의원 외 23명

2. 개정이유

- 해양환경오염행위 및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고, 발생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를 통해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. 주요내용

-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- “바다환경지킴이”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4. 관련법령

-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
-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3. 3. 2. ~ 3. 7. 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27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,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활동을 하는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제2조(정의)에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정의함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바다환경지킴이”란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,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⇒ 본 조례안은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함

⇒ 『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』 제15조2의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범위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적절함

- 안 제6조는 “바다환경지킴이”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,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⇒ 도비가 수반되는 ‘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’의 운영, 예산 지원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함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해양환경오염행위 및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발생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인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함
- 관련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는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흡했던 지원근거를 본 조례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인정됨
-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,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참고

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(2023년 해양수산국 당초예산 주요사업 설명서)

□ 사업목적

- 해양환경오염행위 및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상시 수거인력을 배치하여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사업대상 : 5개 시·군(포항, 경주, 영덕, 울진, 울릉)
- 사업량 : 115명(포항 39, 경주 8, 영덕 40, 울진 14, 울릉 14)
- 시행방법 : 시군보조
- 사업내용 : 해안가 주요지역 해양오염행위 감시 및 쓰레기 상시 수거인력 채용
- 예산액 : 1,193백만원(국비 918, 도비 275)
 - 부담비율 : 국비 50%, 도비 15%, 시군비 35%

□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기투자	2022 투자			2023계획	2024이후
			계	당초	추경		
총계			1,950	1,950		1,835	
예산액			1,267	1,267		1,193	
국비			975	975		918	
도비			292	292		275	
기타부담			683	683		642	
시군비			683	683		642	

□ 편성근거

- 지원근거 :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
- 산출근거
 - 기본급 : 월15회 × 8개월 × 8시간 × 최저임금 9,620원 × 120명
× 65%(국도비부담분) = 721백만원
 - 보험료 및 기타 수당 별도지급 : 376백만원 × 65%(국도비부담분)
= 244백만원
 - 운영경비 : 수거용품 구입비 등(예산한도 내 집행)
→ 351백만원 × 65%(국도비부담분) = 228백만원
- 전년대비 감액사유
 - 사업량 조정(110명 → 115명) / 시군 수요조사 171명보다
감배정(해수부 가내시 결정 '22. 9월말)

□ '22년 9월까지 추진실적

- 집행실적 : 1,267백만원(집행률 100%)
- 수 거 량 : 4,963톤(포항 4,110, 경주 32, 영덕 510, 울진 221, 울릉 90)

□ '23년 추진계획

- 1월 ~ 3월 : 사업비 교부
- 4월 ~ 12월 : 사업 추진
- 수매량 : 8,000톤 정도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민간위탁 동의	출자출연 동의	공유재산 심의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